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0292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피재경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457,837,602원 및 그 중 457,837,2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27,938,020원 및 그 중 227,937,639원에 대하여,각 2021. 1. 12.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2. 접수 제25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 1) 원고는 2017. 6. 14.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원금 4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6. 16. E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았다.
- 2) 원고는 2018. 6.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추가로,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원금 2억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8. 7. 11. E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3) 제1, 2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일부 회수

1) 피고 회사는 2020. 9. 8. E과의 대출약정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 E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원고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1. 12. E에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59,517,986원과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29,679,689원 합계 689,197,67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2. 피고 회사로부터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금으로 1,680,752원(1일간 연체이자로 368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680,384원을 원금에 충당),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금으로 1,742,050원(1일간 연체이자로 381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741,669원을 원금에 충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

1) 피고 B은 1996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0. 6. 15.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과 2015. 4. 2. 설정된 ‘채권최고액 7,9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 있었다.

2)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설정 당시부터 F 소유의 서산시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고 있었는데, 2020. 11. 19.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소유권이 F에서 I으로 이전되면서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해지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2건의 근저당권은 해지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 B은 2020. 7.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25078호로 '2020. 7.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 대위변제한 금액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서 연대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금 457,837,602원(= 원고가 E에 대위변제한 459,517,986원 -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상환원금 1,680,384원) 및 그 중 457,837,234원(= 원고가 E에 대위변제한 459,517,986원 -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상환원리금 1,680,752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21.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1. 27.까지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금 227,938,020원(= 원고가 E에 대위변제한 229,679,689원 -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상환원금 1,741,669원) 및 그 중 227,937,639원(= 원고가 E에 대위변제한 229,679,689원 -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상환원리금 1,742,05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21.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1. 27.까지는 제2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와 피고 C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에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 C는 피고 B와 2018년~2019년에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2020. 5.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그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였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세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4억 2,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양수 당시 피고 B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대물변제를 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환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2020. 8. 19.부터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9. 8.에는 대출약정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실제로 E에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점(제1 신용보증약정 제6조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 피고 B은 곧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거액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처지에 있었고, 피고 B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농산물 물품대금채무가 있어 그에 대한 변제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에게만 이익이 되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는 위 대물변제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변제로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조합은 2015년경 F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와 F 소유의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2,9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② G조합이 2015년경 F에게 대출을 해 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는 1억 7,500만 원(J은행 부동산시세),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담보가치는 505,304,300원(감정평가결과)이었던 사실, ③ 이후 F는 2020. 11. 19. G조합에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대출금잔액은 7,900만 원만 남게 되었고, G조합은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말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 F 소유의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대출금채무 전액인 3억 원이고 물상보증인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전부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피고 B의 책임재산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선의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보증하에 피고 회사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2018년부터 2019. 7.경까지만 거래하였는데 그동안 발생한 대금채무 중 상당 부분이 2020. 5.경까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나 피고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도 피고 B이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7. 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2. 접수 제25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봉조, 판사 김가영, 판사 박지원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 , , ,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91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대 10152㎡
	2. 충청남도 서산시	대 8㎡
	3. 충청남도 서산시	대 485㎡
	4. 충청남도 서산시	대 90㎡
	5. 충청남도 서산시	대 62㎡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5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0797분의 33.628. 이상. 끝.

